

동작구의회공고 제2020-17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5월 8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아동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행복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놀 권리의 보장이 중요한데, 실제로 입시경쟁 중심으로 작동하는 교육체계에서 학습과 놀이 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바, 이에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꿈꾸고 성장하여 인격발현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·시행 등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나.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 규정(안 제5조)
- 다.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등(안 제6조)
- 라.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규정(안 제7조)
- 마. 아동놀이혁신위원회 규정 및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 사항(안 제8조~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(전화 : 820-1716, FAX : 820-1474, E-mail : kyong69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놀 권리”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,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
2.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3.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
4.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)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

2.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

3.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

4.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

5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아동놀이혁신위원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(이하 “아동놀이혁신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3.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
4.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기능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아동놀이혁신 위원회로 본다.

제9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
2.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
3.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,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